

안 내 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와 관련한 소송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고 금융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 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와
- ②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를 2020년 6월 24일에 개선하였으며, 개선 이전 위 예금거래 절차로 인해 피해 사실이 있는 분들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 정 사 업 본 부

국가배상신청 안내문

※ 검찰청 국가배상 안내문을 일부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검찰청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결과가 저희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 심의결과에 따른 배상금 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 유리한 배상결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국가배상심의회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감정이나 검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입증이 불확실하면 기각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지구배상심의회	관할검찰청	지구배상심의회
서울지구배상심의회	서울고등검찰청	대구지구배상심의회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산지구배상심의회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춘천지방검찰청	울산지구배상심의회
인천지구배상심의회	인천지방검찰청	창원지구배상심의회
수원지구배상심의회	수원고등검찰청	광주지구배상심의회
청주지구배상심의회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구배상심의회
대전지구배상심의회	대전고등검찰청	제주지구배상심의회

- ♣ 다음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충실하게 제출하시고 향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 국가배상 신청대상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2. 배상신청서 작성

♣ **신청서의 각 빈 칸**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 다음의 유의사항을 지켜주시면 신속하고 유리한 배상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내지 “피해자”란에 대하여
 - 통상 사고(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청인
 - 그 밖에 사고도 당사자(피해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를 첨부하고 **피해자 및 신청인란에 피해자를 기재하고 위임받은자는 대리인란에 기재**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법정대리인 결정문 또는 후견인 결정문) 제출
 - 신청인 및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인 및 피해자란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명을 기재하여야 함
 - 신청인 및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신청인과 피해자란에 “○○○ 외 ○명”으로 기재 후, 첨부된 별지 신청인표시표에 외 피해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사고개요”란에 대하여
 - ※ 이 부분은 첨부된 사고개요에 자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 사고 장소의 정확한 행정구역명을 인터넷 및 행정청에 확인하고 기재 요망
 - 가해자 소속은 해당 사고 장소 혹은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청 및 소속과 기재
 - 사고 일시 및 시각(예 : 오전 06:00경, 저녁 18:00경 등)을 기재 요망
 - 사고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최소 10줄 이상이 되도록 자세히 작성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칸이 적을 경우 별도양식 없음 A4용지에 작성 첨부)
 - 만일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동인의 이름과 연락처 및 목격 경위 기재 요망
- “신청액”란에 대하여
 - 각 해당란에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뒤, 합계란에 총액을 기재
 - 이번 사건의 **법원 판결문상 위자료는 200,000원**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란에 대하여
 - 보험회사나 가해자 기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재
 -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인보험은 제외)
 - 허위 기재 시 형사상 사기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제출

-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동시에 심의회에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구비서류>

- ① 국가배상신청서(신청인란 서명 또는 날인 누락주의)
-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등) 사본(앞뒷면)을 첨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 각각 첨부).
- ③ 사고 장소의 사진(현장사진 및 현장약도-인터넷지도 활용) 및 사고 후 사진을 컬러로 A4용지에 붙여서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신청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사진을 직접 제출함과 동시에 파일을 CD에 담아 제출하시면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파일을 준비하신 분은 신청서의 구비서류란에 “사진 파일 송부 가능”이라고 기재하여 주시면, 추후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이메일로 사진 파일 송신을 요구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경우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사진 및 영수증 등은 신청서접수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신청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원본(컬러)을 A4용지에 부착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을 기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가 직접 작성한 “목격자 확인서”에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목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을 날인 받아 목격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앞면을 복사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서류 편철 방법
 - 국가배상신청서를 위로 하여 공통서류 → 추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4. 유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 등은 반환이 불가하오니 제출 전 미리 사본 등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배상신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인보험은 제외),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고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을 부풀려서 과다 청구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사안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경우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손해가 전보된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여야 합니다. **손해전보를 받았음에도 국가배상신청을 하거나 취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3조 제8항에 의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2~4개월이 지나면 배상여부에 대한 결정서 정본 등이 송달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의 접수순서대로 심의를 하므로 지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심의결과가 나오면 전화 등 유선상 결과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결정서가 등기 송달 됩니다. 따라서 배상신청 후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본 배상심의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배상결정서 정본이 귀하에게 **도착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본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배 상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직 업 :	
	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	(인)
	대리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피 해 자	성 명 :	
	주 소 :	
	직 업 :	
사 고 개 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발생일시 :	
	발생장소 :	
	가해자 소속 :	
	사고내용 :	
신 청 액	요 양 비	원
	휴업배상	원
	장해배상	원
	유족배상	원
	합 계	
위 사 고 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 역	금 액
사 전 지 급 신 청 액	내 역	금 액

「국가배상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	-------	--

첨부서류

배상종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요양비	1. 요양비의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요양 및 이를 치료할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휴업배상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과 피해자 근무처의 장의 월수입액 증명서)
장해배상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유족배상 및 장례비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및 동산 손해배상	수리견적서 또는 수리인 영수증과 그 내역서
기타 배상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에는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와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서류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